

보안 과제(), 일반 과제(O) / 공개(O), 비공개()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0936-000654-01

수탁 / 2022-035

2022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2023.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연구개발 기간: 2022.01.01.~2022.12.31.) 사업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조 성 식 연구위원

연구원 : 강 다 영 위촉연구원

김 현 홍 부연구위원

서 지 현 부연구위원

이 지 혜 위촉연구원

정 동 덕 연구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영문	Resear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Oper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조성식			직위	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383		휴대전화	010-8302-1011					
		전자우편	sscho@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0934542					
연구개발기간	2022. 1. 1. - 2022. 12. 31.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527,000							527,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강다영			직위	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310		휴대전화						
		전자우편	dayeongk97@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2757295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일

연구책임자: 조성식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정병선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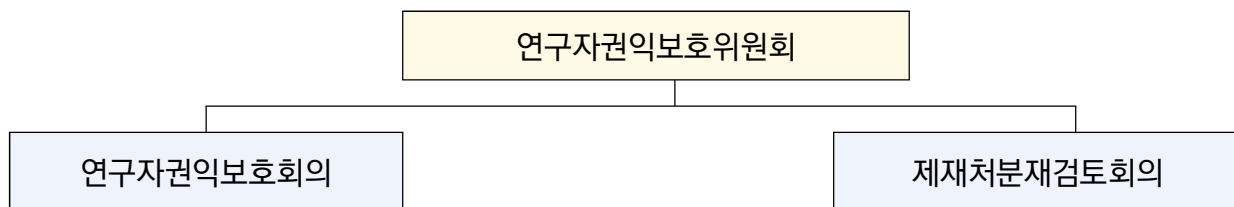
〈 요약 서 〉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2.01.01~2022.12.31					
총 연구개발비		총 527,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7,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억울하게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 권익보호 제도 및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의 기준 마련 					
	전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효율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 제반 사항 준비 및 주요 내용 사전 검토, 상정 안건 작성, 심의 활동 지원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운영을 위한 연구윤리 및 연구자 권익보호 정책, 제재처분 절차 및 제도 개선 연구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안건 준비 지원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실무 가이드라인 고도화 -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한 제재처분 감경 기준 및 제재정보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본 준비 					
연구개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확산에 기여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유도 ○ 연구자 권익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및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활용한 제재처분 제도개선 실효성 강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국문핵심어	연구자	권익보호	위원회	운영	재검토		
영문핵심어	Researcher	Rights Protection	Committee	Operation	Re-examination		

요 약 문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운영을 통해 연구자가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제안
 - * 국정과제 74-4.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연구자 권리 제고)으로 지정(2022.5)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통해 연구자의 권익보호 및 바람직한 국가R&D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구자의 권익보호 및 연구윤리 등의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심의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로 구성



- 연구환경 변화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 처분 기준 제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전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회의(4회)에서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11개 정책 안건 처리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개최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 제재처분재검토회의(23회)에서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118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안건) 작성
 - *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확인 및 부처(전문기관)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 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유도 및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강화
- 연구결과는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가능
 - 연중 상시 운영되는 재검토회의의 자료는 연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자 권익 보호 정책의 수립에 활용
- 도출된 제재제도개선(안)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안건상정,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법령 개정(안) 수요에 등에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마련

 **목 차**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3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4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방법 5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9
 - 1.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미 10
 - 2. 설치배경 및 주요경과 12
 - 3. 역할 및 구성 15

- 제3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19
 - 1.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제도개선 20
 -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심의 24

- 제4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7
 - 1.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30
 -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내용 31

- 제5장 결 론** 39
 - 1. 주요 연구성과 41
 - 2. 연구결과의 활용 및 발전방향 42

- 부 록** 43
 -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기 위원 구성 45
 -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 46
 - 3. 재검토표청서 (연구자 → 각 부처) 68
 - 4. 부처제출자료 (각 부처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72
 - 5. 정부위원회 비교 81



그림 목 차

contents

〈그림 2-1〉 제재처분 재심사 과정	12
〈그림 2-2〉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13
〈그림 2-3〉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15
〈그림 2-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16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국가R&D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고 별도의 재검토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¹⁾
 - 부처별 심의(제재처분평가단 : 전문기관 운영)에 따라 제재처분 결정 후, 연구자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처분하게 되는데, 원처분과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재심의하여 공정성 및 연구자 권리 구제에 한계 존재
 -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 기구가 설치·운영('21.2.22)
 - * 정부위원 4명 외 위원장 1명 포함 민간위원 92명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와 연구자 권익보호·부정방지를 위한 '연구자 권익보호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
 - 2021년 2월부터 본격화된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진행과 연간 재검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142호)이 제정('21.2.22) 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기정통부훈령 제142호) 〉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재처분 재검토 체계 확립을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21.1.1)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법(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비해 제재사유, 판단기준 등이 대폭 변동되고 시효도입, 기산일 폐지 등 제도변화 발생
 - 혁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재제도를 해석할 필요성 대두 및 제재제도개선 체계 고도화 필요성 증대

1) 예시 :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음(66%)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운영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회의(4회)에서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11개 정책 안건 처리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개최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사례 및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 제재처분재검토회의(23회)에서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118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안건) 작성
 - *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확인 및 부처(전문기관)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재처분 감경기준(제59조) 및 현황공개(제62조) 관련 조항 중심 개정(안) 마련
 - * 제재처분 제도개선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장→5장)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방법

- 효율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의 지원을 통해 효과성 제고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2가지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재검토회의의 안건 수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인력을 구성
 - * 재검토요청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안건 작성 및 회의 진행 지원
 - 상시 운영 가능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구성(소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위원과의 연락 및 소통을 제고
 - 안정적으로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회의장을 확보하는 등 연중 상시 재검토회의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 강화
- 주 단위 안건 접수에 따른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를 위해 검토 위원 선정 및 안건 사전 검토 추진
 - 검토 위원 선정 및 연락, 자료의 수집 제공 등 안건 사전 검토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운영사항의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을 위한 자료의 축적 등 향후 재검토 위원회의 활동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해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의 상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실무가이드라인(사례집), 법령개정안 등에 논의결과를 반영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유도 및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강화
- 연구결과는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가능
 - 연중 상시 운영되는 재검토회의의 자료는 연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자 권익 보호 정책의 수립에 활용
- 도출된 제재제도개선(안)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안전상정,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법령 개정(안) 수요에 등에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마련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확산에 기여
 -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의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여
 - 연구자의 권익보호·부정방지를 위한 안전 수립에 기여
- 법률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제도해석 및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제 2 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2월 22일 연구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출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
 - 연구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
 - 연구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보호 장치를 최초로 마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제안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R&D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
- 2022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 4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3회를 개최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11개 정책 안건 논의
 -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118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기준을 제시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보완
- 보고서를 발간하여 2022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성과 활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에 기여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경과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설명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절차와 2022년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안건별로 정리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처리 절차와 2022년 운영내용 회의별로 정리

1.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미²⁾

가. 연구자의 개념

□ 연구자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에서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음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을 의미함. 즉,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의미함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의미함. 즉,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등을 의미함
- 다.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을 의미함. 제2호 가목의 부설연구소는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를 의미하며, 다목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를 의미함. 또한 제3호의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함
-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를 의미함
-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을 의미함
-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을 의미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구자는 교육 및 연구기관(대학·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술 및 예술창작활동, 그리고 학술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법률적인 정의에 따르면, 대학원생(석사·박사)은 사. 목의 연구원에 적용을 받거나, 다. 목으로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

2) 정리 :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문승민 조교수

-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서 연구자(연구개발인력)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음의 업무를 한개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연구개발수행단위에서 간접지원이나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들을 제외한 자들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자(연구개발인력)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음의 업무를 한개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는 인력
 -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작업 수행(실험 또는 조사의 착수 및 수행, 시제품 제작 등)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
 - 연구개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서비스 제공(전산 작업, 문헌정보, 문서기록 등)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의 행정지원
 - 연구개발수행단위에서 간접지원이나 보조적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음
 - 중앙의 전산부서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
 -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인력과 관련된 중앙의 재무 및 인사부서의 서비스
 - 연구개발수행 단위들에 대한 보안, 청소, 유지보수, 구내식당 등의 서비스
 - 한편, 해당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통계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를 고용인력과 조직 외부 기여자로 구분하고 있음
 - 고용인력은 단위의 직원(종속 근로자)과 일부 유형의 독립 근로자들이 포함됨
 - 조직 외부 기여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통계 단위들은 내부 연구개발인력의 효과성을 높이거나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특정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력을 의미함

나. 연구자 권익의 정의

- 연구자의 권익은 일반적, 보편적 의미 해석되며 통상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자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으로 해석함
- 연구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써 그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권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예컨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연구자의 권익은 제재처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연구자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 제58조 제5항에서는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연구자의 권리는 크게 ① 연구자의 기본권리(개인 존엄권, 학업 연구권, 부당한 일 거부권, 공정심사권) ② 부당한 대우, 차별,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③채용과 인정의 기회와 연구자의 권리 ④ 자원의 공평한 배분과 연구자의 권리로 제시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규정) 제1항에서는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의 권리는 일반론적인 권리로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설치배경 및 주요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및 행정소송 증가

- 연구개발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발생
 - * (예시) A연구기관의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B행정기관이 감사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처분(5명 총67억원)
- 부처별 심의(제재처분평가단 : 전문기관 운영)에 따라 제재처분 결정 후, 연구자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처분
 - 원처분과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재심의하여 공정성 및 연구자 권리 구제에 한계 존재
- 부처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상존
 -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았음(66%)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 필요성 제기

-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 기구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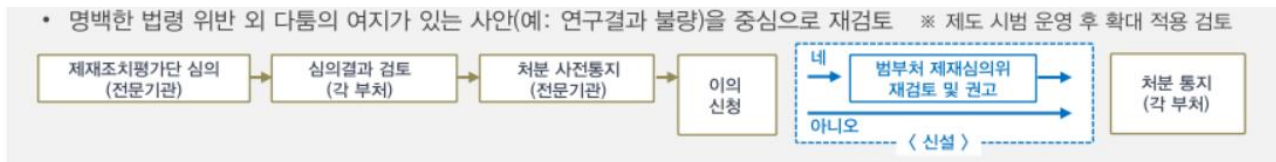
〈그림 2-1〉 제재처분 재심사 과정



-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의 권익 보호 절차 및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 기준 마련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분야 규제혁파 방안(2018. 3.18)에서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안으로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제시

〈그림 2-2〉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20. 6. 9)으로 각 부처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결과에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위원회(과기정통부 소속)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정(2021. 2.22)
- 민간위원 위촉 위원회 출범 및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2021. 2.22) 이후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8회 개최, 18개 안건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43회 개최, 209건 재검토 요청 처리
 - 2022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 4회 개최, 7개 안건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0회 개최, 91 재검토요청 처리
 - 2023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 4회 개최, 11개 안건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3회 개최, 118건 재검토요청 처리
- 제5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일시) '22.3.29.(화), 오후 4시
 - (장소) 세브란스빌딩 22층 회의장
 - (참석자)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7인 및 정부위원 3인
 - (안건) (1호) '22년도 제재처분 재검토회의 운영방안(안)
(2호) 연구윤리 길잡이 개선(안)
- 국정과제(74-4)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연구자 권리 제고)으로 지정(2022.5)

□ 제6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일시) '22.7.22.(금), 오후 4시
- (장소) 광화문 S타워 벤틱스홀
- (참석)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6인 및 정부위원 3인
- (안건) (1호) '22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보고
(2호) 제재처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3호)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 검토(안)

□ 제7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일시) '22.10.27.(목), 오후 4시
- (장소) 세브란스빌딩 22층 회의장
- (참석)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6인
- (안건) (1호)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언 및 조치계획(안)
(2호)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관련 행정제도 개선 추진현황
(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계획(안)

□ 제8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일시) '22.12.28.(수), 오후 3시
- (장소) 세브란스빌딩 22층 회의장
- (참석)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6인 및 정부위원 4인
- (안건) (1호) '22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실적보고
(2호) 부실학술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안)
(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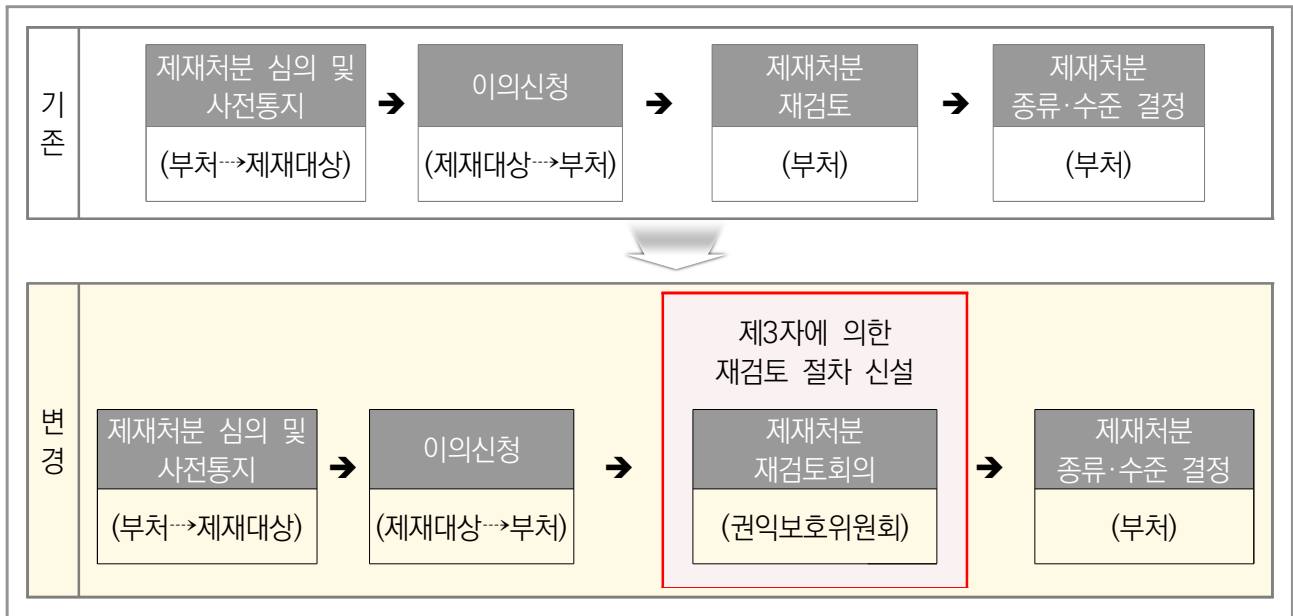
3. 역할 및 구성

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역할

□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 보호 장치

-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성 있는 재검토 실시 및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

〈그림 2-3〉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국가 R&D 제재처분의 공정성·전문성 및 범부처 일관성 도모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

□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R&D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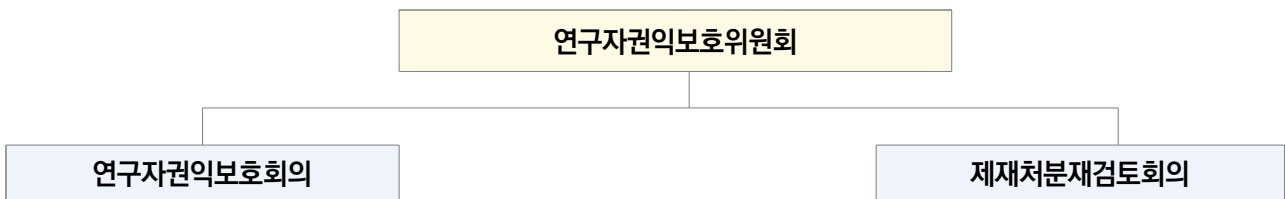
□ (구성) 위원장 1명(민간) 포함,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92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 R&D 수행비중이 높은 부처*의 소관부서 국장급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의 비율로 위촉
 - * (예시) 연구과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분류별(생명·의료·인문사회 / 기계·소재·에너지 / ICT·융합) 위원플 구성
- (운영체계) ①연구자 권익보호 회의, ②제재처분 재검토 회의의 2가지 회의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수행
 - 각각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간주

〈그림 2-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

- (기능)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등을 위한 정책 논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민간위원의 안전 제안도 가능하며, 혁신본부가 안전작성 지원
- (구성) 위원장 1명(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4명과 안전 내용을 고려하여 8명 이내의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원 등 총 13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회의는 7명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소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석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와 달리 안전 상정 필요시 수시 개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기능)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 기능 수행
 - 각 부처는 위원회가 재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최종 결정
 - (구성) 소위원장 중심으로 제재처분재검토회의별 총 7명의 위원 구성·운영
 - 소위원장 1명과 생명/의료, 인문/사회 분야, 기계/소재/ 공공/에너지 분야, ICT/융합 분야, 법률 분야, 회계 분야, 지재권/기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
- ※ R&D수행부처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제외

제 3 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3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운영절차

① 안전의 제안 및 상정 → ② 안전검토 → ③ 결과활용

- ① (안전제안 및 상정)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 제안 가능
- 안전이 제안되는 경우 위원장은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 안전 상정 결정

안전검토대상 예시

- 연구자 권익보호·연구부정 방지 등에 관한 현안·이슈 토론
-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규정 마련 등과 같은 정책적 제안 사항
- 그 밖에 국가R&D 제재제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 ② (안전검토) 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 또는 찬/반 등을 정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③ (결과활용)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④ (회의진행) 민간위원 8명은 안전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안전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
- 회의주기 : 안전상정 필요 시 수시로 개최
 - 회의참석자 : 위원장 1명, 정부위원* 4명 및 민간위원 8명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1.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제도개선

□ 추진배경

-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점검

□ 주요 행정제도 개선안

[제재처분 관련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연구비 용도의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반금액에 비례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 과도한 제재처분을 방지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이해충돌을 고려한 윤리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민간부문의 현장 연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를 반영하여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정(22.5월)하고 현장 의견 지속 수렴하여 보완
 - 추가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공립 대학·출연연 소속 연구자를 위한 법령 해설 제시

	현행	개선
연구윤리가이드라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관련 내용 부재	연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내용 및 법령해설 제시

(1) 제재처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처분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모두 유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제재처분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 (혁신법) 혁신법은 제재정보의 등록 및 공개업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해당업무의 전문기관 대행 불가
 - 제재정보의 등록·공개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에서 공개는 부처 직접수행을 유지하되 등록은 전문기관이 대행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 (시행령) 1억원 이상 연구비 용도의 사용시 제재부가금 산정기준을 위반금액 전체로 해석할 경우 제재부가금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위반금액 전체가 아닌 위반금액 중 기준금액(1억,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을 산정할 것을 명확히 규정
 - * (현행)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또는 200) (개정)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또는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또는 200)
- (시행규칙) 현재 「혁신법 시행규칙」에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서식과 함께 연구기관의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
 - 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연구현장의 활용도 제고
 - * ① 「혁신법」에서 연구기관의 검증대상 부정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서 전체 부정행위로 확대함에 따라 부정행위 별로 검증방법 차등 규정,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 검증의 공정성과 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절차 보완 및 절차별 유의·의무사항 추가,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조항을 신설하고 행위자의 고의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위반행위의 다양성·경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합리화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

□ 제재처분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현행의 제한된 감경범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의 다양성과 경중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곤란
 - *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권의 행사가 필요하나, 제한된 범위(1/2범위)의 감경을 통해서는 과도한 제재 우려
 -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 현행의 감경재량 한도를 100분의 90 범위로 확대하여 제재처분 원인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유도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국가R&D 과제 신청 시 불이익 부과) 국가R&D와 관련이 없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징계만 가능
 - *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제재근거도 부재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연구부정행위자라도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국가R&D 과제 신청시 불이익 부여
 - * (예시) 소관 R&D사업에서 동 내용을 적용코자 하는 부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R&D과제 신청 시 연구자의 연구 부정 관련 징계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선정평가 시 반영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범부처 차원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 부처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시 의결된 주요 쟁점 사항 정리 및 법원의 최신 관련판례 반영한 (舊)가이드라인* 개정

* (舊)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절차기준에 혁신법 개정 사항 반영('21.3월)

□ 주요방향

- (주요쟁점 사항정리) 각 부처의 제재처분 시 고려할 수 있는 위원회심의·의결 사항, 법령해석 결과, 법원 최신 판례 등 제시
- (현장수요 반영) 소관부처 및 전문기관의 제재처분담당 실무자가 제재처분 제반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용 가능하도록 현장의견 반영
 - 관련 FAQ 정리,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장 수요 반영

□ 기대효과

- (연구자 권익보호 기여)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을 유도하여 제재처분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고
- (행정부담 경감) 부처, 전문기관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절차진행시 활용하여 제재처분 소요기간 단축 등의 행정부담 경감

(4) 연구윤리 길잡이 이해충돌 관리 분야 업데이트

□ 추진배경

-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위해 연구윤리 길잡이를 마련했으나 이해충돌 관리 분야의 경우 연구윤리 길잡이에서 제외됨에 따라 후속 조치 필요

* 국공립 소속 및 출연연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제정('21.12.31.)됨에 따라 연구윤리 길잡이에서 제외

□ 이해충돌 관리 분야 주요내용

- (개요) 공공·민간부문의 현장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부분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제시

- (내용)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책무에 대해 제시

(5) 부실학술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 추진 배경

- 와셋, 오피스 등 부실학회 논란이 발생('18.7월)함에 따라 대학, 과기원, 과기출연연 대상 참가자 전수조사, 직무윤리 교육 등 조치 추진
- 부실학술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픈액세스 저널의 성장에 따라 부실의심 학술지 논문게재 증가가 이슈화

□ 추진 방향

비전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윤리 정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연구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학술지 여부는 확일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강제적 제도·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세부추진 과제	<table border="1"> <tr> <td>1</td> <td>부실학술지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질적평가 강화</td> </tr> <tr> <td>2</td> <td>SAFE 운영 개선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td> </tr> <tr> <td>3</td> <td>부실학술지 문제에 대한 연구계 인식 확산</td> </tr> </table>	1	부실학술지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질적평가 강화	2	SAFE 운영 개선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	3	부실학술지 문제에 대한 연구계 인식 확산
1	부실학술지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질적평가 강화						
2	SAFE 운영 개선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						
3	부실학술지 문제에 대한 연구계 인식 확산						

□ 세부 추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내 질적지표 확대, 연구재단 과제평가 개선, 연구기관 연구 업적평가의 질적평가 유도 등 질적평가 강화
- 부실학술지 판단을 위한 제공 정보 다양화, 데이터 현행화, 연구자 주도 학술지 검토·토론 활성화 등 SAFE 운영 개선
- 부실학술활동 예방 캠페인 확대·강화, 관계기관 연계·협력으로 부실학술지 문제에 대한 연구계 인식 확산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심의

(1) '22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중점 추진과제

□ 제재처분 재검토 심의 내실화

- (판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의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제재처분 재검토회의 및 연구개발혁신법 가중감경 기준 수립 등에 활용

*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관련 100여건 사례 검토

※ 판례에 나타나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재검토 심의과정에서의 검토기준을 체계화

- (DB 구축) 유사 사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별 심의결과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반복 쟁점에 대한 검토기준을 확립

※ 최종 심의결과 DB를 구축하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결과 공유·참조

- (자문위원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법령·규정의 해석·적용 및 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등의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

□ 재검토 회의 운영 효율화

- (자료 고도화)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제재처분 재검토요청 시 제출할 필수 및 붙임자료를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프로세스 확립

※ 자료 제출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주요 부처 및 전문기관 협의('21.8.25)

- (비상시 운영체계 마련) 비상상황 발생 시 위원회 사무국에서 현황을 확인하고, 장소변경 혹은 영상회의 추진 여부 결정 및 통보

- (결정절차 마련) 다수결은 위원장의 주관으로 항목별*로 순차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무국에서 다수결 결과를 정리

* ① 제재 존부여부 결정, ② 참여제한 기간 결정, ③ 환수금 결정, ④ 제재부가금 결정 ⑤ 기타 사항

(2)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검토

□ 추진배경

- 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관부처 및 전문기관 간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

- 제재처분 재검토 시 부처별 요청되는 재검토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공통된 검토의견이 제시된 재검토 기준 마련

□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는 감경처분) 위원회와 소관 행정부처는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 제재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해당처분으로 인한 사익침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의 처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도 가능
- (혁신법상 제척기간 규정의 소급적용) 혁신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전과제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경우 제재처분 불가
 - 제척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혁신법 제3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이 타당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회수금 미납 시 참여제한 기간 상한) 회수금 미납 시 참여제한 하되, 그 상한은 10년으로 하여야 함
 -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의 처분범위는 혁신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3) 제재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기존 서비스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 본인의 제재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중요정보인 관계로 본인신청*을 통한 개별 조회
 - * NTIS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국가연구자번호를 통해 현재과거 제재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소속기관의 제재확인도 신청 후 개별적으로 확인가능
 - NTIS의 '본인제재확인'을 통해, 연구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기관명과 제재정보를 검색결과로 확인

□ 서비스 개선

- 제재정보조회 '제재확인하기'에서 '제재정보 부존재 사실확인발급' 기능 구현 및 서비스 개시 (9.27.)
 - 연구자 본인의 성명, 국가연구자번호만 기재된 '제재정보 부존재 사실확인서'를 발급, 소속기관 증빙시엔 소속기관명도 추가 제공

□ 기대효과

- 국가R&D사업의 공동 참여자간 신뢰수단으로 활용 및 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기능개선으로 평가대비 및 행정적 부담 완화

제 4 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4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처리 절차

①재검토 접수 → ②안건준비 → ③사전검토 → ④회의개최 → ⑤결과통보

- ① (재검토 접수) 1주일 단위로 재검토 요청 건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② (안건준비) 1주일 단위로 접수된 재검토 요청 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접수종료 후 건별로 검토 안건 작성
 -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시 관련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안건 준비
 - 검토과정에서 오류 발견,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으로 부처의 재검토 또는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한 상황에는 보완 요청* 가능

* 연구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 ③ (사전검토) 준비된 안건에 대해 위원별로 사전검토 요청(1주일 내외)
- ④ (회의개최)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①원 제재처분의 적절성 여부, ②(원 제재처분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 제시
 - 소관부처(전문기관) 담당자 및 재검토요청자 소명, 최종 토의 등으로 회의 진행*

* 진행시간은 안건별 1시간 내외 소요 예상
- ⑤ (결과통보) 재검토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 도출시, 소관부처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결과 송부
 - * 재검토요청자에게 결과 송부시, 최종결과는 부처에서 별도 통보함을 안내

재검토처리절차 기한 관련 해석

- (원칙) 소관부처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5항
- (해석) 유사 사건에서 법적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바,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존재

징계의결의 기한규정은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1.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 ◆ 총 12개 부처의 118건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처리
 - ☞ 원 처분보다 감면 70건 (59.3%), 원 처분 유지 47건(39.8%), 기타 1건(0.9%)

□ 개요

- (개최현황) '22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3회 개최
 - (재검토대상) 총 12개* 부처가 요청한 재검토 118건이 처리되어
전년대비 회의 2회 ↑, 요청 부처 4개 ↑, 요청 건수 27개 ↑
 - *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 (제재사유) 용도 외 사용(49.2%), 부정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18.6%), 연구과정 및 결과 불량(14.4%), 회수금미납(14.4%) 등의 순서로, 전년대비 '용도 외 사용' 비중 다소 감소(60.4% → 49.2%, 11.2%p ↓)
 - ※ (건수) 용도외사용(58건), 부정확방법(22건), 평가불량(17건), 회수금미납(8건), 기타(13건)
- (운영성과) 총 118건의 검토 안건 중 원처분 감면 비중은 59.3%이며,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반영률은 97.3%로 확인
 - (재검토결과) 감면을 일부 감소('21년 62.6% → '22년 59.3%, 3.3% ↓)
 - (부처최종반영) 부처 수용율 증가('21년 93.4% → '22년 96.6%, 3.2%p ↑)

□ 결과

- (시사점) 전년대비 재검토 요청하는 부처, 건수, 재검토회의개최가 증가되는 등 위원회 역할·기능이 성공적으로 안착
 - 재검토 감면율의 일부 감소는 원처분에서 감면처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부처가 경직성 처분에서 탈피하는 등 긍정적 효과로 분석
 - 부처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미반영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부처 수용율이 제고
- (효과분석)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재검토로 이의신청 반영가능성 제고, 범부처적인 재검토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의 투명한 제공으로 부처·재검토요청자의 수용성 제고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내용

□ 제1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 13.(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3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 2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위조·변조)'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2. 10.(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환경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2. 24.(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5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3. 1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4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농촌진흥청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6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3. 31.(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국토교통부 ‘부정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7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4. 14.(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행정안전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행정안전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8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4. 28.(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9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5. 12.(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10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5. 26.(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11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6. 9.(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1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6. 23.(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8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8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13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7. 14.(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14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8. 4.(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15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8. 18.(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4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농촌진흥청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자원통상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16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9. 1.(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7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9. 15.(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부정행위(위조)’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부정행위(위조)’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18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9. 29.(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중복계재)’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19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0. 20.(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연장 미승인(납부 연장 승인 여부 결정)’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20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1. 3.(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21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1. 1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1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2. 1.(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4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농촌진흥청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 회수금미반납'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 회수금미반납' 관련 제재처분

□ 제23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2. 12. 15.(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4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연구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보건복지부 '연구부정행위(위조)'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회수금 미납' 관련 제재처분

제 5 장

결 론

제5장 결 론

1. 주요 연구성과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안건) 작성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 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개최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2. 연구결과의 활용 및 발전방향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연구의 의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확산에 기여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를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제재처분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개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료는 장기적인 연구자 권익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의 한계 및 발전방향

- 과학기술부 담당과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기관인 KISTEP에 전담 조직 및 인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전문지식의 축적을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화 및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

부 록

부록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기 위원 구성

□ 위원장

성명 (성별)	전공	주요 이력
나○○ (남)	기계공학	(현)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전) 과기부 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 -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 소위원장

성명 (성별)	전공	주요 이력
박○○ (남)	대사생화학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11~'13) 대한미생물학회 이사('10~)
김○○ (남)	신경생물학	21세기프론티어 사업단 기획위원/위원장('03~'11) 미래부 출연연 기관평가위원('16~'18)
한○○ (여)	에너지소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14~'15)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16~'17)
이○○ (남)	기계공학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10~'15)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14~'15)
박○○ (남)	금속재료	산업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위원('04~'06) 대한금속 재료학회 이사('15~'20)
유○○ (남)	전자공학	대한전자공학회 협동부회장('12~'18) 지능형반도체포럼 운영위원장('19~)
변○○ (여)	컴퓨터공학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회장('13~'15) 한국연구재단 PM외부평가위원('18~)

□ 위원구성

구분	생명/의료 인문/사회	기계/소재 공공/에너지	ICT/융합	법률	회계	지재권/ 기타	전체	비중
산업계		4	3	8	12	9	36	39.6%
대학	14	8	11	5	2	2	42	46.2%
연구소	2	5	2	1		3	13	14.3%
전체 인원 (명)	16	17	16	14	14	14	91	100%

* 위원장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7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증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전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22. 2. 28.>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31.>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	3년 이내 3년 2년 2년 5년 2년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참고]

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제보 등에 따른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6호,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시행 2021. 2.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2호, 2021. 2. 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2.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이하 “연구자권익보호회의”라 한다)
2.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이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6조(검토사항의 제안·발굴) ①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구성)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검토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7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전에 연구자권익 보호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9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구성)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4조제 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한 위원이 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고르게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운영)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 이해관계인,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감정·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 통지)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 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 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 토회의 개최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 요청의 취하)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위원 회의 검토결과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새로운 사실관계,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15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서약)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검토 자료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 보고, 재검토 요청의견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 참석 수당, 안전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 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2호, 2021.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재검토요청서 (연구자 → 각 부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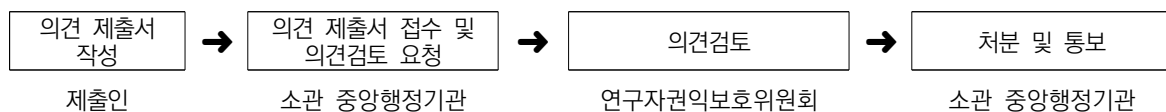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부록 4 부처제출자료 (각 부처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 재검토 요청 접수 자료 양식

1. 대상과제 개요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선정 년도	총연구개발기간	총연구개발비 (천원)

2. 원제재처분 내용 및 제재사유

1) 원제재처분(종합)

※ 개인(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대표, 연구지원인력, 직원 등)과 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나누어 표기

제재대상 (개인/기관)	제재처분		
	참여제한(년)	환수금(원)	제재부가금(원)

2) 원제재처분(세부)

대상과제		제재사유	제재조치		
과제명(과제번호)	제재대상		참여제한 (년)	환수금 (원)	제재부가금 (원)

3) 제재사유 : 제재사유 명칭 표기

- 제재사유와 근거법령의 간략한 서술

3. 제재근거 및 산출식

※ 근거법령은 해당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의 법령으로 기입

- (참여제한) 참여제한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 (환수금) 환수금 부과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4. 추진경과

- 2020.01.01. : 일자별 경과 및 주요 결정/확인(발견) 사항

필요 시 표/설명박스 등을 활용하여 상세 설명

○

5.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정보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직급)

2 재검토 요청 접수 시 관련 붙임자료

1. 재검토 요청 공문(부처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2. 재검토요청자가 제출한 요청서 및 관련 붙임(별첨) 자료 일체
3.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및 결과 자료
 - *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심의결과 등 서명포함 화일은 PDF 제출 가능)
4. 사전통지 공문(사전통지 내용 포함)
5. 법원(형사 및 행정 소송 등) 판결문, 검찰 기소자료 등 관련 자료
6. 적용 법령 및 규정 파일 일체
 - *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의 법령 및 규정
7.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
8.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연구윤리위원회 최종보고서
9. 그 외 적발경위, 추진경과와 관련된 제재처분 관련 자료 일체
 - * 자체감사 실시한 경우 해당 감사결과 자료, 연구결과 불량인 경우 평가 결과보고서 등(전문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경과에 작성요청)

※ 붙임자료는 가능한 한 한글 파일 제출 요청

◇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에서는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심의하므로 가능한 한 사전통보시(제재처분시) 검토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제14조) 위원회는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물 또는 필요한 자료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부처에서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처분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 결과가 '제시된 근거자료 부족'의 이유로 처분 감경 혹은 면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3 재검토 요청 접수 자료 (예시)

1. 대상과제 개요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선정 년도	총연구개발기간	총연구개발비 (천원)
첨단기술개발사업	표적치료제를 이용한 백신개발	홍길동 (울도대학교)	2020	2020.1.1.~ 2020.12.31.	500,000

2. 원제재처분 내용 및 제재사유

1) 원제재처분(종합)

* 개인(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대표, 연구지원인력, 직원 등)과 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나누어 표기

제재대상 (개인/기관)	제재처분		
	참여제한(년)	환수금(원)	제재부가금(원)
홍길동(연구책임자)	5년		5,000,000
홍길현(참여연구원)	3년		
울도대학교산학협력단(주관기관)		32,160,000	

2) 원제재처분(세부)

대상과제		제재사유	제재조치		
과제명 (과제번호)	제재대상		참여제한 (년)	환수금 (원)	제재부가금 (원)
(위탁)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홍길동 (연구책임자)	용도외사용	2년		2,000,000
(위탁)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홍길현 (참여연구원)	용도외사용	3년		
(위탁)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울도대학교 (주관기관)	용도외사용		32,160,000	
(세부)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K)	홍길동 (연구책임자)	연구부정	3년		3,000,000

3) 제재사유 :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 기술이전에 의한 자의중단을 연구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과학기술기본법 ('19년.8.27 시행)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함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사유를 고려한 금액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5억 원(해당 연도의 출연금) * 0.1 = 5천만 원
- 감경사유 :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해당금액을 사업비 계정에 회복하여 연구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함
- (환수금2)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연구책임자(홍길현)에게 환수금 66,720,000원을 부과함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세부기준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연구기간	환수금	산출 근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위탁) 면역체계 작용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홍길현 (울도연구원)	2011.3.1~ 2012.2.29	14,8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거1)
			2012.3.1~ 2013.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거2)
	(세부) 면역체계 작용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홍길현 (울도연구원)	2013.3.1. ~ 2014.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근거3)
			2014.3.1~ 2015.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근거4)

* 용도의 사용금액 전액 /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제제부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연구기관(울도대학교)에 제제부
과금 1천만 원을 부과함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의4(제제부과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5천만 원(용도의 사용금액) * 0.1 = 5백만 원
- 감경사유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인정되며, 최종평가 의견 및 논문성과 등이 우수함

4. 추진경과

- 2020.01.01.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자 경찰 신고(울도경찰서)
- 2020.01.03.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 접수(울도대학교)
- 2020.01.05.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체 감사 시작(울도대학교)
- 2020.02.05.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체 감사 종료(울도대학교)

울도대학교 자체감사 결과(울도대학 법무감사팀)

- 연구책임자는 자신의 실험실 랩장으로 하여금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 연구과제의 인건비, 장학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랩장이 특정 학생을 따로 불러 반납 금액을 알려주고, 학생이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랩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월 인건비를 편취
- 편취된 금액은 랩장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비, PC방 이용료, 택시요금 등 실험실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연구실 및 실험실의 집기류 구매, 교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랩장을 포함한 재학생 대부분은 인건비 공동관리는 물론 이를 확인해줄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졸업생은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건비 공동관리 시작 시점이나 대상 학생,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
- 신고자를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인정

- 2020.02.10. : 연구부정행위 확인 통보(울도대학교 → 과학재단)
- 2020.01.12. :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찰 이관(울도남부지검)
- 2020.01.13. :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찰 조사 시작(울도남부지검)

- 2020.02.14.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과학재단)
- 2020.02.16.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울도대학교)
- 2020.02.17. :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 시작(과학재단)
- 2020.02.30. :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 종료(과학재단 감사팀)

과학재단 감사팀 조사내용
<p>1) 사실관계 조사개요</p> <p>(가) 조사일시 : 2020년 (나) 조사장소 : 울도대학교 (다) 조사인력 : 과학재단 감사팀</p> <p>2) 사실관계 조사결과(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 교수는 과학기술진흥연구사업 및 타 정부 R&D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본인 지도학생 에게 지급된 연구장학금 등 총 500,689,178원을 편취하였음 <p>3) 금액 확인결과(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재단이 지원한 연구비 중 확인된 용도의 집행된 금액 중 과학기술진흥연구사업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금액은 총 162,170,000원임

- 2020.3.28. : 제15차 과학재단 연구관리위원회 심의

심의사유	제재여부	심의결과
연구비 용도의 집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3년 - 출연금환수: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10% 해당 금액(50,000,000원) - 제재부과금: 용도의 사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000,000)

- 2020.03.29. : 제6회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처분
 - 처분 결과 : 참여제한 3년, 용도의 사용 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 (50,000,000)및 제재부가금 (10,000,000) 부과
- 2020.04.01. :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결과 통보
- 2020.04.05. :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에 대한 연구책임자 기관 이의신청
- 2020.04.15. : 과학재단의 이의신청 기각 및 제제결과 최종 통보
- 2018.11.30. : 울도지방법원 1심 판결(사기, 징역1년)

울도지방법원 판결문 요지

-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랩장이 특정 학생을 따로 불러 반납 금액을 알려주고, 학생이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랩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월 인건비를 편취
- 편취된 금액은 랩장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비, PC방 이용료, 택시요금 등 실험실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연구실 및 실험실의 집기류 구매, 교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랩장을 포함한 재학생 대부분은 인건비 공동관리는 물론 이를 확인해줄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졸업생은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건비 공동관리 시작 시점이나 대상 학생,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
- 신고자를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선고함

- 2020.06.25. : 울도고등법원의 2심 판결(사기, 징역 6월)
- 2020.11.26. : 대법원 판결(항소 기각)
- 2020.12.31. : 연구책임자 홍길동 제재처분재검토 요청(연구책임자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5.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정보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직급)
홍판서	울도연구부	aab@korea.kr	044-234-2323 010-6789-1122	사무관
홍길현	울도연구평가원	ebc@sistek.re.kr	043-750-2000 010-1234-5678	책임연구원
홍길동	울도연구평가원	sss@sistek.re.kr	043-750-3000 010-3333-1234	선임연구원

부록 5 정부위원회 비교³⁾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연혁 및 설립 근거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제정을 통해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은 동일하게 법적 절차에 의한 권익을 보호받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이재교, 2001)
- 2005년 교원지위법은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어 그 명칭이 교원소청심사제도고 변경됨(이동찬, 200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심사 청구 및 불복시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교정을 만들고 특히 교원지위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식장과 안정적인 권익보호를 도모(이재교, 2001)

□ 주요기능

-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이의를 행정부 스스로 심사·결정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의 일종임(이재교, 2021)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 그리고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에 따른 구제방법이 존재함(이시우, 2006)
 -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을 통한 구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불이익 처분의 구제기능을 수행함
 - 특히 위원회를 통한 운영은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독립성과 합의성을 추구하는 위원회 조직 내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그리고 '심사과' 형태의 세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⁴⁾

3) 정리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전미선 조교수,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문승민 조교수

4) 참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e.go.kr>)

- 심사과는 심사과장 1인과 심사1팀, 심사2팀, 심사3팀, 기획송무팀, 행정지원팀, 부속실이 존재하며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직도

출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e.go.kr)

□ 소청심사기관으로서 정부조직 내 다양한 소청심사위원회

-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존재하며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논의이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음(이동찬, 2008)

<표> 정부조직 내 소청심사기관 현황

구분	소 청 심 사 기 관					
행정기관	국가공무원	경력직	특정직	일반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외무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다만,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순경은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제도 없음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	- 국방부 군무원인소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가능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무원	경력직	특정직	일반·가능직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특정직	소방직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현재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출처: 이동찬(2008)

2. 국민권익위원회

□ 연혁 및 설립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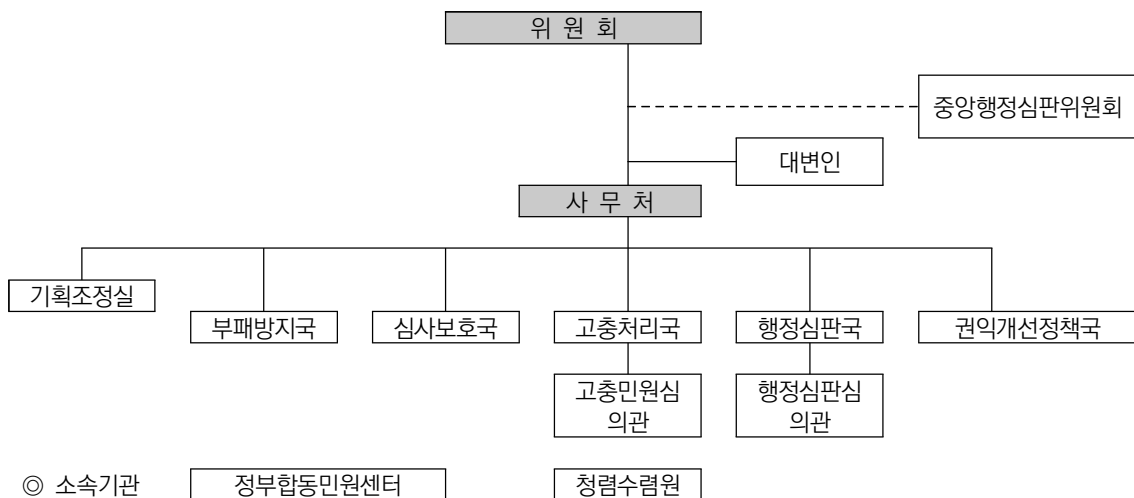
- 2001년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이후 해당 조직은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후 2008년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함
- 법적 근거로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

□ 주요기능

- 해당 위원회 조직은 대표적으로 부패방지과 권익구제 역할을 함. 기능별 업무로는 반부패 및 청렴, 고충처리 업무,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업무, 행정심판업무, 국민소통 및 제도개선 업무가 존재함
 - 이 중 권익구제 업무는 고충처리(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조정, 민원처리 실태 확인 및 평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와 행정심판(행정심판제도 총괄 및 조정, 행정심판 사건 처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이 해당됨
 - 국민소통 및 제도개선은 부패방지과 권익구제 역할 모두에 걸쳐있으며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환류,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운영, 정부합동 민원 안내·상담과 국민콜110 운영 등이 있음

□ 조직

-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2021.9월 기준), 소송정원은 정무직 4명, 고위공무원단 17명, 전문경력관 8명, 특정직 3명 등 총 561명으로 구성되었음(이정주, 2021).



[그림]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

출처: 이정주(2021)

□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

- 이정주(2021)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 기능, 역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기구로 설계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함
 - 반부패 및 청렴 관련 유사 기능과 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통합
 -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조사권 및 수사권 등을 부여, 사회 현안 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법제도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음
- 실질적인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의 성과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3만 3,000여명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였음
 - 권익위원회(2020)의 자료에 의하면 시정권고 834건, 의견표명 945건, 조정 208건, 합의 6,368건 총 8,355건의 고충민원을 인용하였음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43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의 제도화를 도모하여 권익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수사례와 고충민원 해결 기법 등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행정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채널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홈페이지(simpan.go.kr) 를 통해 최신 재결례를 공개함
 -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재결이란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함(「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 이는 국민들이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부작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이유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음
-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처분내용(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국민 스스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음⁵⁾

5)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543>

□ 행정심판 인용률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최근 상승하였으며, 2021년 기준 20.3%로 접수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음(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1.10.19.)⁶⁾
 - 최근 행정처분의 '위법성' 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 국민 권익의 구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만 심리의 범위로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부당성을 포함함

□ 행정심판 사무를 법제처로 이관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

-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사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이를 통해 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사무를 이관하는 대신 반부패 업무에 집중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 하고, 이름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함⁷⁾

6) <https://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0>

7)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20002_32626.html

3. 사회보장위원회

□ 설치 근거 및 구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26.)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
 - 위원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보장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8) 기능을 수행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 정부(14인) 및 민간(15인) 위원 등 30인으로 구성됨
 - (정부) 기재·교육·복지부장관(부위원장), 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고용·여가·국토부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 (민간) 근로자(민노총, 한노총) 및 사용자(경총, 중기중앙회) 단체, 언론, 법률, 사회복지, 보건, 경제, 지방자치 전문가 등
- 체계는 본위원회(장관급), 실무위원회(차관급), 그리고 5개 전문위원회(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통계, 통합돌봄)로 구성



[그림] 사회보장위원회 조직도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sc.go.kr>)

□ 주요 심의 사항 및 현황

- 중장기 사회보장정책 비전·발전 방향 제시
 - 사회보장 기본계획(5년)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8)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13년 전면개정) 따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 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비용 부담,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 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관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음

-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재정추계·재원조달, 협의·조정,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통계, 제도평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관리 등
-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

〈표〉 2020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주요 안건
21차('20.5월)	사회보장위원회 2020년 운영계획(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등 총 10건
22차('20.8월)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도 시행계획 등 총 4건
23차('20.12월)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코로나19 지원사업 영향 분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21년 운영계획(보건복지부, 2021. 4. 6)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사회보장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3개과와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행정 데이터TF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총괄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운영 - 기획/재정, 통계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 사회복지지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 분석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 분석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체 운영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연계 - 사회보장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평가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위원회 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그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업무 구성도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sc.go.kr>)

□ 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

- 사회보장 위원회가 사회보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탐색들이 이어져 왔음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15)⁹⁾에서는 전문위원회 간 연계 및 협업, 제안 채널의 다양화,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위원회 결정 이행력 강화 등을 제안함
 - 최영준 외(2017)¹⁰⁾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개편의 필요성, 개별위원회와의 관계 정립의 필요 등을 제안함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21)은 ‘2021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세부 추진방향’에서 심의·조정 기능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기능 강화와 위원회 심의 안건 확대를 주장함
-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안건논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논의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절차 강화를 위해 사전설명회 강화, 분기별 위원회 개최(일정 명확화), 주요 사회보장 영역별 이슈의 발굴이 고려되었음
 - 또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보장 총괄기능의 실질적 확대가 요구되어 왔음

9)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5).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제11차 사회 보장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10) 최영준, 김태일, 김진욱, 김보영, 최혜진, 최정은. (2017).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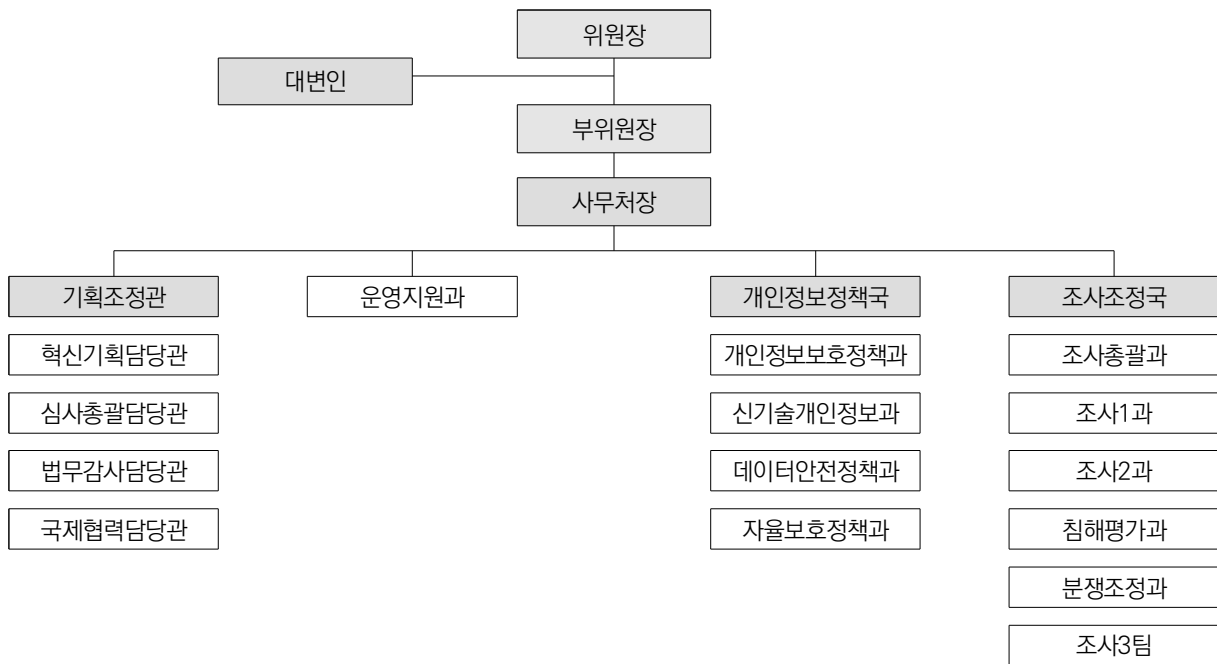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연혁 및 설립 근거

-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공식 출범함
- 2016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기능의 신설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의 이관 등 조직의 정원과 기능 확대
-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2020.8.5.)으로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분야),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 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구성

- 위원회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제도 개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처리·관리구제 및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정책·제도·실태 등 조사·연구, 교육·홍보,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및 외국 개인정보 보호기구와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는 분쟁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당 등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켰음
- 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의 임명 또는 위촉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됨
 - 상임위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 정당 교섭단체 추천으로 5명이 구성됨



[그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기관의 역할을 정책 기능, 시장 및 공공부문의 감독 기능, 위법 시정 및 권리 구제 기능, 교육·홍보·연구 기능,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등록과 행정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몇 가지 기능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이은우, 2012)

<표>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기능

구분	기능설명
정책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능은 결정, 형성, 조율, 권고, 집행, 의견제시, 행정입법의 제정,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포함함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정책 형성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의결기능, 연차보고서를 통한 평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안과 법률·정책·제도에 대한 의견제시권이 존재함
권리구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공공분야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구제 기능으로 구분 가능 - 방식에 따라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유형과 행정절차에 가까운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결정의 효력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되는 유형과 권고의 효력만 부여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위법 시정과 감독 및 권리구제 기능을 살펴보면 해외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들은 대체로 민간과 공공부문 상관 없이 다양한 주체에서 업무를 담당함 -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및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함.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행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다양한 인·허가 기능 등

출처: 이은우(2012) 재구성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의 비교¹¹⁾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제재처분검토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등을 위한 정책 논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기능을 수행함
 - 해당 기능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①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할 때 ②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할 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연구자가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부처가 다시 심사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제재조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를 보장하여 연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해당 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도록 하였음(이재훈·유지은, 2020)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92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규모의 위원회로 판단됨
 - 2021년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자료를 살펴보면,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보다 많은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4개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626개 위원회 중 상위 15번째에 해당함¹²⁾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정원 6명)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1) 정리 : 제도혁신센터 조성식 연구위원, 강다영 위촉연구원

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 100명 이내) ②정책기획위원회(행정안전부, 100명 이내) ③공항공개발기술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100명 이내) ④중양가축방역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 100명 이내) ⑤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100명 이내) ⑥중앙약사심의위원회(식품의약품 안전처, 100명 이내) ⑦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100명 이내) ⑧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500명) ⑨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행정안전부, 200명) ⑩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200명) ⑪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170명) ⑫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100명) ⑬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100명) ⑭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100명)임

〈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유사 위원회 비교

구분	목적	성격	위원(정원)	지원조직(규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권익구제 및 교원 보호 ¹³⁾	행정위원회	최대 12명 ¹⁴⁾	위원회 25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¹⁵⁾	행정위원회	총 15명 ¹⁶⁾	위원회 561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조정 ¹⁷⁾	심의위원회	총 30명 ¹⁸⁾	사무국 32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¹⁹⁾	자문위원회	총 9명 ²⁰⁾	사무처 154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²¹⁾	심의위원회	총 96명 ²²⁾	지원과 6명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권익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위원회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가짐

- 권익보호를 목표로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되며 유사 자문, 심의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위원수가 92명에 달하는 대규모 위원회에 해당함
- 위원회의 기능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원조직의 구성 및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운영체계 내실화 및 적극적인 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무국 신설 등 지원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위원회의 위상 제고 필요

1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을 설립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신장 및 안정적인 권익보호 도모

14) 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8, 심사과(심사과장 1인 등)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8)을 설립근거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16)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

17) 사회보장기본법(2012 개정)을 설립근거로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해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대응 관련 통계 발굴·수집 및 관리

18) 위원장(국무총리) 1인, 정부위원 14인, 민간위원 15인

19) 개인정보 보호법(2011)을 설립근거로 유출·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20) 대통령의 임명/위촉하며 상임위원 2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7인(위원장 제청(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5인))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2021)을 설립근거로 제재처분의 공정성 확보 및 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재검토 시 별도의 기구 설치

22) 민간위원 92명(위원장 1인, 분과별 소위원장 6인 포함), 정부위원 4명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2022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